

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2021109(본소), 2022나2021116(반소) 판결

[청구이의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연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방민주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1. 2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19가합545879(본소), 2021

가합593529(반소)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128,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6.부터 2022.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4,010,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서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9년 증서 제56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73,20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2022. 5. 11.(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 회사”를 “원고”로, “원고 B”를 “B”(원고의 대표이사이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들”과 “원고 회사”를 각 “원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2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외부 계약상 잔대금채권의 상계를 통해 원고가 E에 지급한 154,888,800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10%)을 초과하여 지급한 104,010,872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3.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6, 8 내지 17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원고의 과실비율은 20%, 피고의 과실비율은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1) 이 사건 내외부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본다.

피고 측이 E와의 이 사건 외부 계약의 체결 과정을 주도하다가 대리점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E와 이 사건 외부 계약을, 피고와 이 사건 내부 계약을 각 체결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내외부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축전지 및 그 성능 조건 등이 피고와 E 사이에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피고가 제조하는 이 사건 축전지를 납품받아 E가 F에 납품하는 이 사건 UPS에 설치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내외부 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형식적 수익금액이 약 4억 원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가 제조, 납품하는 이 사건 축전지를 실제로 설치하면서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점, 원고 또한 피고가 제조, 납품하는 이 사건 축전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피고에 비하여 과다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축전지의 성능 조건 등에 관하여 본다.

E는 피고의 이 사건 1, 2차 견적서 등을 토대로 피고가 제조하는 이 사건 축전지가 이 사건 입찰에서 요구하는 ‘정전보상시간 10분’의 성능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축전지를 이 사건 UPS에 사용할 축전지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견적서를 보내면서 정전보상시간을 10분 또는 30분으로 나누어 권장 축전지 사양 및 그 근거가 되는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는 축전지용량산출서를 함께 보냈고, 그 직후 E의 요청에 따라 부하역률의 적용 수치를 보완한 이 사건 2차 견적서를 보내면서 이 사건 축전지의 방전 성능 등이 표시된 이 사건 방전테이블 등을 함께 보냈다.

피고의 이 사건 1, 2차 견적서 등의 내용에 의할 때, 이 사건 내외부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축전지의 경우 그 성능에 있어 정전보상시간이 10분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피고는 E가 납품받고자 하는 축전지가 이 사건 UPS에 사용될 축전지로서 이 사건 입찰에서 요구하는 ‘정전보상시간 10분’의 성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3) 이 사건 축전지의 성능 미달 등에 관하여 본다.

F의 이 사건 축전지에 대한 신뢰성시험 결과, 피고가 제조, 납품한 이 사건 축전지의 경우 ‘정전보상시간 10분’의 성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 사건 축전지의 경우 피고가 작성, 교부한 이 사건 방전테이블상의 수치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였다.

방전테이블상의 수치는 피고가 거래 상대방에게 권장 축전지의 사양과 견적 등을 제시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피고가 제조하는 축전지의 구매 여부와 수량 등을 결정할 때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피고가 작성, 교부한 이 사건 방전테이블상의 수치가 부정확한 것인 경우 이 사건 축전지의 용량 계산도 부정확하게 될 수밖에 없어, 설령 이 사건 축전지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KS 규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축전지가 이 사건 방전테이블상의 수치에 상응하는 성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은 피고로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작성, 교부한 이 사건 방전테이블(2017년도)의 경우 별도의 확인 없이 2012년도 방전테이블의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2012년도 방전테이블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결과 등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이 사건 방전테이블은 물론 2012년도 방전테이블의 정확성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E에 이 사건 방전테이블을 기초로 이 사건 1, 2차 견적서와 축전지용량산출서 등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E로 하여금 이 사건 축전지가 이 사건 입찰에서 요구하는 ‘정전보상시간 10분’의 성능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축전지를 원고를 거쳐 E에 납품함에 있어 이 사건 축전지가 이 사건 방전테이블상의 수치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정전보상시간 10분’의 성능 조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4) 이 사건 축전지의 하자 보수 등에 관하여 본다.

F의 이 사건 축전지에 대한 신뢰성시험 이후 원고와 피고 및 E는 이 사건 축전지의 성능 미달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고가 이 사건 축전지 1개조 12세트를 추가 제조, 납품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 중 축전지 생산원가의 1/2씩을 피고와 E가 부담하며, 그 설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그 협의 과정에서 피고는 추가 비용 중 피고의 부담 비율 및 미지급 납품대금과 추가 비용의 선결제 조건 등에 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한편 이 사건 축전지의 성능 미달과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 및 E는 그 해결 방안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E는 ‘정전보상시간 10분’의 성능 조건 충족 등 F와의 납품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기 위하여 F로부터 추가로 축전지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축전지의 하자를 보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847,998,800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만약 피고가 이 사건 축전지 1개조 12세트를 추가 제조,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축전지의 하자를 보수하였다면, 이 사건 내부 계약상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570,240,000원{= 1,140,480,000원(2개조 12세트) ÷ 2}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더 적은 금액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내부 계약 당시 이 사건 축전지의 경우 ‘정전보상시간 10분’의 성능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축전지가 ‘정전보상시간 10분’의 성능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수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반면 피고로서는 원고와 E에 전달한 피고의 공장품질검사계획서 및 그에 따른 품질검사에 따라 KS 규격에 부합하는 이 사건 축전지를 제조, 납품하였으므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내외부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축전지 및 그 성능 조건 등이 피고와 E 사이에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피고 및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내외부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는 E가 원고를 통해 피고로부터 납품받고자 하는 축전지가 이 사건 UPS에 사용될 축전지로서 이 사건 입찰에서 요구하는 ‘정전보상시간 10분’의 성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방전테이블상의 수치와 피고의 공장품질검사결과를 믿고 이 사건 축전지가 ‘정전보상시간 10분’의 성능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수절차를 따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원고가 최종 납품처인 F의 신뢰성시험에 준하는 검수절차를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축전지의 방전 성능 등이 표시된 이 사건 방전테이블상의 수치가 실험결과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확한 것이었다면, 피고가 제조, 납품한 이 사건 축전지가 피고의 공장품질검사결과와 같이 KS 규격에 부합한다고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방전테이블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축전지의 용량은 ‘정전보상시간 10분’의 성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작성, 교부한 이 사건 방전테이블의 경우 그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 사건 축전지의 경우 이

사건 방전테이블상의 수치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는바, 이 사건 축전지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KS 규격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축전지의 ‘정전보상시간 10분’의 성능 조건 미충족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과실비율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부담하는 E에 대한 손해배상액 508,799,280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101,759,856원(= 508,799,280원 × 0.2)이고, 피고의 부담 부분은 407,039,424원(= 508,799,280원 × 0.8)이다.

원고가 이 사건 외부 계약상 잔대금 채권의 상계를 통해 154,888,800원을 E에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53,128,944원(= 154,888,800원 - 101,759,856원)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128,944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2.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11.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53,910,480원을 E에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금액이 피고의 부담 부분인 407,039,424원을 초과하지 않음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이재신, 판사 김영현